

# 서울특별시 건강돌봄서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636
----------	-----

2019년 6월 28일  
보건복지위원회

###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5월 7일 김동식 의원 대표발의
2. 회부일자 : 2019년 5월 24일
3. 상정일자 : 제287회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 6월 19일 상정·의결(원안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김동식 의원)

#### 1. 제안이유

가.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사회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평소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자 하는 욕구는 커지고 있으나, 보건·의료·복지 서비스가 수행 주체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유기적 연계와 지속적 관리가 미흡한 실정임.

나. 이에 시민이 거주하는 곳에서 각자의 욕구에 맞는 보건·의료·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건강돌봄서비스 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건강고위험군에 대한 건강돌봄서비스 제공 및 자원 확보 등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나. 건강돌봄서비스 내용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다. 건강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경 조성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라. 건강돌봄서비스 추진 및 운영을 위한 서울시건강돌봄지원단 설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마. 건강돌봄서비스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

### Ⅲ.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정창훈)

#### 1 제정안의 취지

- 제정안은 시민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돌봄서비스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임.

#### 2 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

##### 가. 건강돌봄서비스

- 제정안은 건강고위험군 시민이 사회·경제적 이유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대상으로 건강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건강 고위험군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시민을 의미함.
- 제정안 제2조에 따르면 건강돌봄서비스는 포괄적 건강평가,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연계, 지속적인 관리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의미함.
- 건강돌봄서비스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될 예정으로 이는 재가(在家)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하게 됨.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건소에 건강돌봄팀을 구성하고 전담 인력을 통해 서비

스를 제공함.

- 2018년 건강돌봄팀 구성은 다음과 같음.

4개구 29명 건강돌봄팀 구성 운영

- 마을의사 4, 간호사 6, 방문간호사 3, 영양사 3, 물리치료사 (작업,운동) 3, 사회복지사 4 담당팀장 4, 정신건강전담요원 1, 행정직 1

○ 제정안 제4조는 이 건강돌봄팀의 역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제4조(건강돌봄서비스의 내용)** ① 건강돌봄서비스는 재가(在家)서비스

스로 제공할 수 있다.

② 건강돌봄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고위험군에 대한 신체·정신·사회적 건강평가 및 개입
2. 제1호의 평가에 따른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연계
3.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교육 및 정보제공
4. 영양상태 개선을 위한 교육과 영양보충식품 지원
5. 재활서비스 지원
6.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건강고위험군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강돌봄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이는 ‘커뮤니티 케어’<sup>1)</sup>로 볼 수 있음. 서울시 역시 해당 서비

1) 케어가 필요한 주민(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자기 집, 그룹홈 등)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스를 ‘서울케어’ 라는 이름으로 홍보하고 있음. 제정안을 통해 서울형 커뮤니티 케어의 방향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나. 제정안의 내용

- 제정안은 포괄적인 건강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5조에 시장으로 하여금 보건·의료·복지 전문가, 관련 단체·기관, 자치구 등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운영 해야 한다고 하고, 자치구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음.
- 또한 제6조는 건강돌봄서비스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시건강돌봄지원단’ 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시민건강국의 싱크탱크 조직인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과의 역할설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3 정책전인의 필요성

- 최근의 보건복지의료정책은 자원간의 연계를 통해 개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커뮤니티 케어라고 불리우는 최근의 정책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음.
- 서울시가 제정안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최종적으로 다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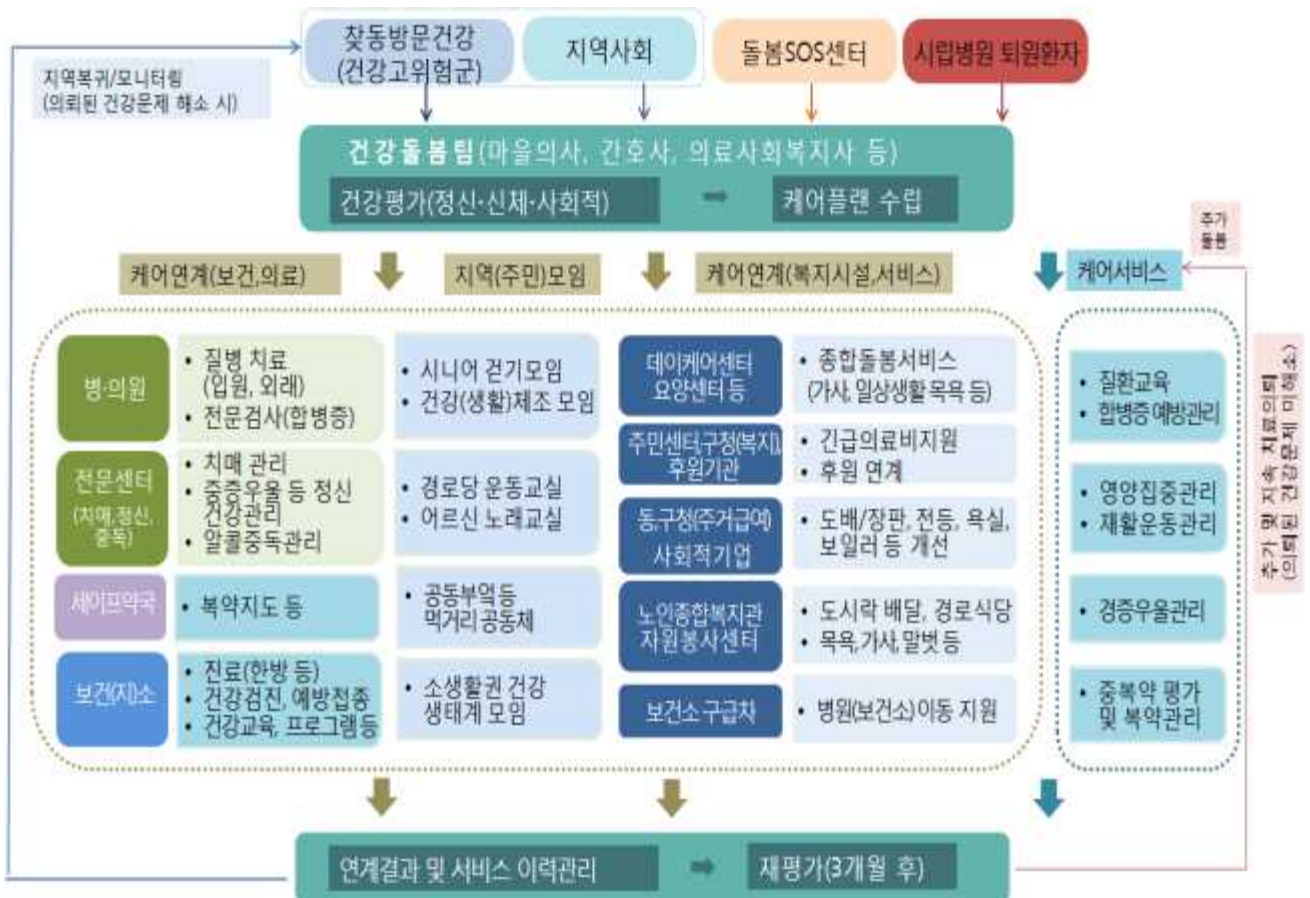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영양 돌봄 독립생활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 (보건복지부 2019,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계획」)

의 [그림]과 같음.

- 찾동이나 지역사회, SOS센터, 시립병원 퇴원환자 중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 보건소의 건강돌봄팀이 평가를 통해 케어플랜을 수립하고 적절한 자원의 연계와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내담자의 지역사회 재활을 돕고, 시간을 두고 추적 하여 개입의 성과를 확인하는 것임.
- 현 시점에서 제정안이 담고 있는 내용은 간결함에도 불구하고 위의 그림과 같이 광범위한 서비스 안을 담고 있음.
- 제정안은 서비스의 틀을 제안한 것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사업의 시행 이후에 조정될 것으로 예상함. 따라서 조례안의 통과 이후에는 조례안의 틀을 바탕으로 의회의 정책건인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림] 건강돌봄서비스

- 특히, 사업의 시작단계(발굴, 의뢰)에서 시민건강국과 복지정책실이 같이 수행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집행부서의 고질적인 병폐인 부서간 칸막이로 인해 서비스간 연계가 어려울 수 있음. 이에 의회의 정책건인이 필요하다 할 것임.



#### 4 종합의견

- 서울케어로 불리는 서울시의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발의된 제정안으로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 보다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내용임.
- 조례의 심의에 앞서 사업내용과 추진방향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임. 이를 통한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건강돌봄서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동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36
----------	-----

발의년월일 : 2019년 5월 7일

발 의 자 : 김동식, 오현정, 봉양순, 이병도  
의원 (4명)

찬 성 자 : 김혜련, 서윤기, 이영실, 김화숙,  
이정인, 김소양, 김종무, 유 용,  
김상훈, 이호대, 오한아, 최 선,  
황규복, 노승재, 이은주, 정진철,  
채인묵, 최영주, 김춘례, 안광석,  
최정순, 김기덕, 성흠제, 강대호,  
김평남, 김정태, 김용연, 이상훈  
의원 (28명)

## 1. 제안이유

-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사회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평소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자 하는 욕구는 커지고 있으나, 보건·의료·복지 서비스가 수행 주체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유기적 연계와 지속적 관리가 미흡한 실정임.
- 이에 시민이 거주하는 곳에서 각자의 욕구에 맞는 보건·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받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건강돌봄서비스 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건강고위험군에 대한 건강돌봄서비스 제공 및 재원 확보 등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건강돌봄서비스 내용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건강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경 조성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건강돌봄서비스 추진 및 운영을 위한 서울시건강돌봄지원단 설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마. 건강돌봄서비스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 서울특별시 건강돌봄서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돌봄서비스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고위험군”이란 고혈압, 당뇨병 등으로 인한 합병증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나 사회·경제적 이유 등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말한다.
2. “건강돌봄서비스”란 건강고위험군 시민이 지역사회에서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제공하는 포괄적 건강평가,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연계, 지속적인 관리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강고위험군이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건강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돌봄서비스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강돌봄서비스를 제공할 때 건강고위험군의 욕구와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시장은 건강돌봄서비스를 제공받는 건강고위험군을 사회보장제도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건강돌봄서비스의 내용)** ① 건강돌봄서비스는 재가(在家)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다.

② 건강돌봄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고위험군에 대한 신체·정신·사회적 건강평가 및 개입
2. 제1호의 평가에 따른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연계
3.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교육 및 정보제공
4. 영양상태 개선을 위한 교육과 영양보충식품 지원
5. 재활서비스 지원
6.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건강고위험군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강돌봄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건강돌봄 환경 조성)** ① 시장은 건강고위험군의 욕구를 고려하여 건강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복지 전문가, 관련 단체·기관, 자치구 등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치구 및 민간단체에 대하여 건강돌봄서비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된 예산 집행에 대한 세부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지원단)** ① 시장은 건강돌봄서비스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시건강돌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단을 해당 분야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제2항에 따라 지원단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

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교육 및 홍보 등)** 시장은 건강돌봄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 및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시 건강돌봄지원단 운영비(≒2,000,000천원)

- 서울시 건강돌봄지원단 운영비

$$= \sum_{i=1}^5 (\text{연간 서울시 건강돌봄지원단 운영비})_i$$

※  $i$  = 비용추계 연차(2020년 ~ 2024년)

- 연간 서울시 건강돌봄지원단 운영비

$$= 400,000\text{천원}$$

※ 참고) 유사형태의 서울시 사업지원단 예산 지원 현황(2019년 기준)

: 감염병관리지원단 612,666천원/ 영유아 방문건강관리사업지원단 350,000천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금연분과) 400,000천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360,000천원/ 아동자립지원단 310,977천원

####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주    무    관      채소영

☎ 02-2180-7944

e-mail : liz1998@seoul.go.kr

## 서울케어-건강돌봄 체계 구축 운영

- 사업목적 : 보건소·지역사회 연계한 대상자 중심의 포괄적 건강돌봄서비스로 어르신 등이 <지역에서 건강한 노후 보내기>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지역포괄케어 구현에 기여
- 추진근거 : 보건의료기본법 제33조(노인의 건강증진)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 사업내용
  - 서비스 대상 : 건강고위험군(방문건강관리, 의료기관, 지역사회 발골의뢰)
  - 사업내용 : 대상자 맞춤형 건강돌봄서비스 제공, 건강돌봄 기반 조성 및 운영
    - ① 건강돌봄 기반 조성 : 신규 참여구 확대 운영, 의사 역량강화 교육, 매뉴얼·전산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대시민 홍보 활동, 자치구 사업 추진 지원 등
    - ② 시민 중심의 포괄적 건강돌봄서비스 제공
      - ▶ 케어플랜 : 포괄적 건강(신체,정신,사회) 평가하고 맞춤형 관리계획 수립
      - ▶ 케어서비스 : 만성질환(특히 당뇨병) 관리, 영양 집중관리, 방문재활, 질환교육 등
      - ▶ 케어리퍼 : 상급(시립)병원, 민간병의원, 정신 등 전문 관리센터
      - ▶ 지속관리 : 연계 결과 관리, 입원환자 퇴원 후 연계 관리
- 운영규모 : 10개 구(기존 4, 신규 6)
- '19년 예산 : 1,505백만원 (건강돌봄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자치단체경상보조)

## 서울시 건강돌봄서비스 홍보사업

- 사업목적 : 지역포괄케어 건강분야 선도정책인 서울시 건강돌봄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및 이용자 참여율 제고 위한 지속 홍보로 사업의 성공적 안착 유도
- 근거 : 「맞춤형 포괄케어를 위한 시민 건강돌봄서비스 추진계획」 (’18. 11. 13)
- 홍보사업 내용
  - 건강돌봄 포럼‘서울 시민 건강돌봄서비스 선포식’
  - 건강돌봄 체험마당(시민참여형) 개최
  - 언론사, 지하철 등 매체 홍보
  - 인쇄물, 홍보 Kit 활용 홍보 등
- '19년 예산 : 90백만원 (건강돌봄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사무관리·지역포괄케어 대시민 홍보 등)